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4호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수목원의 휴원일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1조)
- 마. 수목원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0.(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인천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수목원(이하“수목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86(장수동) 및 그 일원에 둔다.

제3조(관람 및 입장 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 시간은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관람 시간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목원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휴원일)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다음 날에 휴원한다)

2. 설 · 추석연휴

3.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4.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원일에 개원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원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 · 관리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 증식 · 보존 · 복원 · 관리 및 전시
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 · 산업적 조사 및 연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9.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10. 희귀식물 ·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존 및 점검
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 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7조(금지행위) ①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행위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만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장하는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체육 활동 및 레크레이션(오락 등) 등을 하는 행위
4.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5. 음주, 흡연, 취식 행위
6. 지정된 장소, 관람로 이외에 출입하는 행위

② 시장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한 경우에는 수목원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수목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목원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부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취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불
2. 수목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환불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환불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정 기관, 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및 시설물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기획전시실	1일	20,000	
강의실, 교육장 등	2시간	20,000	
영리목적의 사진촬영	4시간	100,000	
	1일	200,000	
영리목적의 영상물촬영	4시간	200,000	
	1일	400,000	

- ※ 주 : 1.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2.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따른 사용료와 가산금(1시간 초과
마다 사용기준 사용료의 2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을
합산하여 초과사용료 계산

시설사용 변경(취소)허가 신청서

신청자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연락처 :
신청 내용	<당초>신청내용 :	
	<변경>신청내용 :	
	변경(취소)사유 :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수목원 시설을
사용 변경(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설사용 취소 신청의 경우 사용료 환불은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 처리됨.

인천광역시장 귀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조(국립수목원 등) ○ 제11조(입장료 등)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